

의안번호	제827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10일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7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발의자 :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박봉순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비비 사용 명세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안 제2조)
- 예비비 지출에 관해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 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비용 추 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회계법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 사유서를 제출함